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

2024.08.01.

신영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회사 「내부통제규정」 및 지침에 따라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및 제외된 정보

대상정보	제외정보
법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문에 따른 미 공개중요정보	회사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정보교류를 차단함.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이해상충 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라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이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규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교류 할 수 있음.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 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 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 다만,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또는 계열회사인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5영업일이 지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교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 2.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3.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4. 회사의 「내부통제규정」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5. 감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회사가 금융투자업등 관련 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7. 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분의 설정

1. 고유재산운용
2. 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무
3. 투자중개업과 투자매매업
4. 회사와 계열회사
5. 회사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6. 기타 회사에서 정보교류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1. 금융투자협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 정보 여부의 판단·식별
2.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구분	내용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법 제84조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법 제85조 및 제98조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따라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구분
대응방안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내부통제규정」 제35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 정보교류차단 담당 부서에 이해상충 보고 및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회사의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

-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 총괄 부서 : 준법감시담당부서
-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 준법감시인